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80

발의연월일: 2020. 11. 18.

발 의 자 : 천준호 • 이수진비 • 민병덕

이용선 · 오영환 · 허 영

최종윤・유정주・이수진

강득구 · 이해식 · 박영순

주철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했음. 또한, 안전장비미착용시 법칙금 부과 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했으며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대폭 완화하였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11건에 불과하던 전동기보드 민원이 올해 7월까지 약 2000건이나 접수된 바 있고, 전동기보드 관련 사고도 보험처리된 건수만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 2020년 상반기 446건으로 급증했음. 아울러,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경우 80%가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비해 전동기보드의 사고 빈도가 10배 이상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자 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 킬로미터로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벌칙 강화 및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규정을 재신설하는 등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9호의2 중 "25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3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⑤ 제2항제2호다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사람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1항제1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본문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1항제1호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1항제4호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항제1호 중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1항 중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4조제2호 및 제3호 중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각각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6조제11호 및 제12호 중 "자전거등을"을 각각 "자전거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	19의2
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u>20</u> 킬로미터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	
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u>.</u>
20. ~ 33. (생 략)	20. ~ 3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	
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	
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	
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u>다)</u> 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u>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개정법률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ス)	<u>(</u>)	개인형	이동	<u> 등장</u>
치를 포함한	<u> </u>			
법률 제17371호			트법 얼	일부
개정법률				
제47조(위험방>	지를	위한	조치)	1
			- <u>(개</u> 역	<u> </u>
이동장치를	포함	함한다)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① ② (생 략)
-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 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 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④ ~ ⑩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 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u>다)</u>
<u>.</u>
④ ~ ⑩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80조(운전면허) ①
<u>다만, 「교통약자의 이동</u>
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
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
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u>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 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 다.
- 1. (생략)
- 2. 제2종 운전면허 가. ~ 다. (생 략)

<신 설>

- 3. (생략)
-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할 수 있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구조 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②
1. (현행과 같음)
2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3. (현행과 같음)
(3)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⑤ 제2항제2호다목의 원동기장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 을 수 없다.
 - 1. 18세 미만<u>(원동기장치자전거</u> <u>의 경우에는 16세 미만)</u>인 사 람
 - 2. ~ 7.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개인형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u>.</u>
1(원동기장치자전
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
<u> 우에는 16세 미만)</u>
2. ~ 7. (현행과 같음)
②
1
(개인형 이

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 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 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 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 다.

2. ~ 8. (생략)

③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 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 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 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동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 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 1.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 5. (생 략)
- ② ~ ⑤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 4. 군(軍) 복무 중 자동차등(개 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 람
 - 5. ~ 9. (생 략)
 - ② ③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1(<u>개인형 이동장치</u>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
 1 ~ 3 (현행과 같음)
4 <u>(フサ</u>)
4 <u>(フサ</u>)
4(개 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4(개 <u>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u>

개정법률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

개정법률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u>개인형</u>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u>.</u>

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 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
- 2. ~ 20. (생략)
- ② ~ ④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레시된 시트카리크 스키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u>서 같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4조(벌칙)

- 1. (생략)
-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 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 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질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 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 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 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3의2. ~ 9. (생 략)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법

1. (현행과 같음)
2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J.
<u>(개인형 이동</u>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3의2. ~ 9. (현행과 같음)
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
를 제11011조 고도파 <u>으</u> 员 달干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 11. ----------<u>자전거</u>를 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 12.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

다)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

----<u>자전거를</u>